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94. 9. 12
총무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 8. 24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4. 8. 24
- 다. 상정일자 : 제2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94. 9.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춘기)

- 가. 제출이유
 - 동사무소 건물의 신축에 따라 동조례중 동사무소 소재지를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공덕제2동사무소 소재지를 “공덕동 378-6”으로 변경(안, 제4조 별표1)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건재)

- 동 조례안은 안 제4조에 의한(별표1) 동사무소 설치·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공덕 제2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의 “공덕동 253-19”를 “공덕동 378-6”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이는 공덕제2동사무소의 신축 이전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24
----------	-----

제출년월일 : 1994년 8월 24일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사유

동사무소 건물의 신축에 따라 동조례중 동사무소 소재지를 일부 변경코자 하는 것임.

2. 개정주요골자

- 공덕제2동사무소 소재지를 “공덕동 378-6”으로 변경(안, 제4조별표1)

3.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 제6조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필요성 : 불필요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의한 (별표 1)의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공덕제2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의 “공덕동 253-19”를 “공덕동 378-6”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7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별표 1) 동사무소 설치,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				
구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관할		구분	동사무소 명칭	동사무소 소재지	법정동관할	
			전지역 관할	일부지 역관할				전지역 관할	일부지 역관할
마포 구	(생략)				마포 구	(현행과 같음)			
	공덕제 2동	공덕동 253-19				공덕제 2동	공덕동 378-6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